

광주지방법원 2021. 5. 4 선고 2020가단5080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나58683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5. 4 선고 2020가단508012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

담당변호사 박철수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시율

담당변호사 이종관

변론종결 2021. 4. 6.

판결선고 2021. 5. 4.

주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809/587210 지분에 관하여 2015. 3. 2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153,739,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선택적으로 주문 제1, 2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53,739,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(1) (주)D(이하 '소외 은행'이라 한다)은 2013. 7. 10. (주)C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게 420,000,000원을 대출해주었다.
- (2) 소외 회사는 2015. 3. 26.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809/587210 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,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,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. 3. 30. 접수 제310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위 근저당권을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- (3) 소외 회사는 2016. 2. 25.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(인천지방법원 2016회합4), 2016. 10. 10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.
- (4) 소외 회사의 관리인 E은 (주)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,000,000원에 매도한 후 2016. 12. 15.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153,739,726원을 배분하였고, 피고는 2016. 12. 26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. 12. 15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하였다.
- (5) 소외 회사는 2017. 2. 3.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으나, 그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

명백하게 되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.

(6) 원고는 2017. 5. 30. 소외 은행으로부터 (1)항 기재 대출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169,955,348원(= 원금 167,995,988원 + 이자 1,959,360원)의 대출채권(이하 '이 사건 대출채권'이라 한다)을 양수하였고, 소외 은행은 2017. 8. 22.경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5호증, 갑 제7호증의 1, 2, 3, 갑 제8, 9, 1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 요지

원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청구를 한다.

가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분받은 153,739,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부당이득반환청구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분받은 153,739,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.

가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1) 관할위반

가) 주장 요지

이 사건 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.

나) 판단

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,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,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,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'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'가 아니라 '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'라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2. 5. 10.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).

민법 제467조 제1항에 의하면,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,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 부분은 그 변제의 장소가 원고의 소재지이고, 이 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.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소제기기간 도과

가) 주장 요지

소외 회사는 2016. 2. 25.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. 10. 10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, 소외 은행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이고, 원고도 2017. 5. 30.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면서 인수받은 자료와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신용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이다. 그럼에도 원고는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. 3. 12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나) 판단

소외 회사가 2016. 2. 25.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. 10. 10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,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소외 은행이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2017. 8. 23.경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본안에 관한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, 이 사건 대출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2)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

가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소외 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 초 G(주)로부터 CNC 가공기(모델명 H, 제조사 : G(주), 이하 CNC 가공기도 모두 같다) 10대를 319,000,000원에 매수하여 2015년 초 소외 회사에게 이를 매도하고, 매매대금 중 150,000,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을 제1호증의 1, 2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G(주)로부터 2014. 3. 19. CNC 가공기 2대를 63,800,000원에, 2014. 3. 24. CNC 가공기 8대를 255,200,000원에 매수한 사실,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당시 CNC 가공기 20대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G(주)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소외 회사가 2015. 2. 2. G(주)로부터 CNC 가공기 10대를 319,000,000원에 매수한 사실,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CNC 가공기 20대 중 10대는 2015. 2. 10.에, 나머지

10대는 2015. 12. 10.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[따라서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던 CNC 가공기 20대 중 10대는 2015. 2. 2. G(주)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, 나머지 10대는 그 취득일이 2015. 12. 10.이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낮다(피고는 2015년 초 소외 회사에게 CNC 가공기 10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)], 피고가 2015년 초 소외 회사에게 CNC 가공기 10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(계약서, 세금계산서, 금융거래내역 등)가 전혀 없으며, 피고는 CNC 가공기 10대의 매매대금 중 150,000,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매매대금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.

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CNC 가공기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CNC 가공기 매매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

가)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고,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,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(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다65058 판결,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82118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보전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)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). 따라서 피고는

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분받은 153,739,726원(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이다)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옥희

목 록

1. 인천광역시 연수구 호

1등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연수구

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-지상5층 교육연구시설

지하 1층 568.15㎡

1층 1,841.91㎡

2층 3,165.99㎡

3층 3,081.14㎡

4층 2,605.40㎡

5층 2,596.1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인천광역시 연수구 대 5872.1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6.08㎡

대지권의 표시

1 소유권대지권 5872.1분의87.96

2. 인천광역시 연수구 호

1등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연수구

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~지상5층 교육연구시설

지하 1층 568.15㎡

1층 1,841.91㎡

2층 3,165.99㎡

3층 3,081.14㎡

4층 2,605.40㎡

5층 2,596.1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인천광역시 연수구 대 5872.1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9.44㎡

대지권의 표시

1 소유권대지권 5872.1분의90.13

3. 인천광역시 연수구

토지의 표시

인천광역시 연수구 대 5872.1㎡

